

붙임 2. 금고 지정 지침

과천문화재단 금고 지정 지침

과천문화재단 금고 지정 지침

제정 2026. 10.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재단의 장이 소관 현금의 보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비용의 지급, 자금관리 및 전산시스템 연계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재단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 약정”이란 재단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력사업비”란 재단과 금고 금융기관 간 약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재단과의 협력사업을 위하여 금고 금융기관이 재단에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재단이 관리하는 회계 및 자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 ② 관계 법령, 위·수탁협약 또는 보조사업 지침 등에서 특정 금융기관 이용 또는 별도의 자금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재단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고의 수) 재단은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약정기간) 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 ③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고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 지정방법) ① 금고는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재단 소재지역에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3. 기관의 통합·신설 등으로 한시적인 금고 지정이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과천문화재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②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2. 예금금리 수준: 20점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10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5. 지역사회 공헌: 17점
 6. 기타 사항: 6점
-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별표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금고업무 수행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배점을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로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로 하여 모든 평가 세부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배점하한에 도달한 이후의 순위에는 배점하한을 적용한다.
- ③ 별표 제1호가목의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절대평가하며,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로 한다.
- ④ 평가에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경영지표는 금융감독원 등 해당 감독기관이 공시하거나 인정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예금금리는 동일한 기준일,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 등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평가한다.
- ⑥ 지역사회 공헌실적은 금고 지정 공고일 이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재단과의 협력사업계획은 금고 지정 이후의 계획만을 평가한다.
- ⑦ 동일한 실적 또는 제안내용을 둘 이상의 평가항목에 중복하여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평가자료의 기준일, 실적 인정기간, 세부 산정기준 및 증빙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고 지정계획에서 정한다.

제9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재단의 장은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 지정방법 및 세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 지정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4. 금고 지정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 지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단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정·회계·금융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방공공기관 또는 금융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과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4. 재단 임직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

4.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자문·고문 등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평가대상 금융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정보 및 그 밖의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고 지정 공고) ① 재단의 장은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고업무의 범위 및 약정기간
2. 참가자격
3.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자료의 기준일 및 실적 인정기간
6. 그 밖에 제안서 작성 및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이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①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할 수 있다.

③ 각 평가항목은 다른 평가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의 지정) ① 재단의 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②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포기하거나 금고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한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금고업무 관리능력

3. 예금금리 수준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재단의 장은 금고 지정이 완료된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을 공개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및 금융기관의 정당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약정) ① 재단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지정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단과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고의 취급업무
2. 수입금의 수납·송금 및 자금의 지급·이체
3. 예금금리 및 금융거래 수수료
4. 자금관리 및 전산시스템 연계
5. 정보보안 및 장애 대응
6. 전자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배상 및 변상책임
8. 비용부담
9. 협력사업비
10. 약정의 해지
11. 금고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12. 약정기간
13. 그 밖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협력사업비의 관리 및 공개) ①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

② 협력사업비는 재단의 예산에 편성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의 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가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④ 재단의 장은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 금고 지정 또는 금고약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재단에 제공하는 금전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금고운용 자료의 제출 등) ① 재단의 장은 자금운용 및 금고업무 관리에 필요한 경우 금고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계좌 및 금융상품별 자금운용 현황
 - 2. 예치금액·예치기간 및 적용금리
 - 3. 이자수입 현황
 - 4.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운영현황
 - 5. 그 밖에 재단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금고약정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재단의 장은 금고업무 수행 및 약정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금고가 금고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등으로 재단 자금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금고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장애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재단의 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1조(금고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①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금고는 새로

운 금고가 금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계좌, 전산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금고 지정부터 적용한다.

<별 표>

과천문화재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내평가기관(5점) - 국외평가기관(5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5점) - 총자산순이익률 (수익성, 2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5)	
2. 예금금리 수준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0)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5)	
	다.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5)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10	
	가. 관내 지점의 수	(7)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2)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 재단 ERP·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전자금융시스템 간 연계 및 구축 전환 지원능력 포함	(14)	
	나. 금고업무 수행실적 및 전담 지원체계·대응능력	(8)	
5. 지역사회 공헌		17	
	가. 과천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최근 3년간 과천시 지역 내 기부 후원 등 재정적 기여(6) - 문화예술·복지·교육·취약계층 등 공익사업 수행·지원실적(6)	(12)	
	나. 과천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생 실적	(3)	
	다. 재단과의 협력사업계획	(2)	
6. 기타 사항		6	
	가. 금융거래 수수료 적용수준	(3)	
	나. ERP 등 전산연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단 부담비용	(3)	